

직제 규칙(안)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학교법인 동양학원 정관 및 동양미래대학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학칙에 의하여 본 대학의 조직 및 구성원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학교 행정의 운영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 대학의 직제에 관하여 법령, 정관, 학칙 및 기타 본 대학의 각종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.

제 2 장 조 직

제3조(기구) 본 대학의 기구는 별표와 같다. <개정 2009.10.01> <개정 2010.04.01>

제4조(정원) 본 대학 교직원의 정원은 고등교육법, 고등교육법시행령, 기타 시행규칙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장 구성원

제5조(교원, 일반직원 및 조교) ① 본 대학에 학장, 교원과 직원 및 조교를 둔다.

② 교원은 교수, 부교수, 조교수, 전임강사로 한다.

③ 일반직원은 행정직, 기술직, 기능직으로 한다.

④ 제2항의 교원 이외에 필요에 따라 강의전담교원, 산업체경력교원, 초빙교원, 산업체겸임교원 및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. <개정 2006.12.26>

제 4 장 기 구

제6조(학장 등) ① 학장은 본 대학을 대표하고 교무를 통할하며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② 본 대학에 1인의 부학장을 둘 수 있으며,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.

③ 부학장은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 유고 시 학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학장, 부학장 유고 시는 교학처장, 산학협력처장, 기획처장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각 부서의 장 등) ① 제3조에 규정한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장이 임명한다.

1. 처장, 부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.
2. 학부(과)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.
3. 사무처장은 일반직 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.

② 행정직 팀장은 행정직 부주사 또는 사서직 부주사 이상으로, 기술직팀장은 기술직 부기사 이상으로 보한다. <개정 2006.12.26>

③ 각 부서의 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, 감독한다.

제8조(교학처) ① 교학처에 학생선발 및 교육지원팀, 교육운영팀, 교수학습지원팀, 취업 및 학생지원팀과 교수학습개발센터를 둔다.

② 교학처에 두는 각 팀의 현원은 정관의 정원 범위 내에서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며 교수학습개발센터 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10.10.01>

제8조의2(학생서비스센터) ① 학생서비스센터장은 교학부처장이 겸하며 취업 및 학생지원팀 업무와 학생관련 제 민원업무(학생서비스센터 업무), 보건실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학생서비스센터에 두는 직원의 수는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행정부서의 현원으로 한다.

제8조의3(교수학습개발센터) 삭제<개정 2009.10.01>

제9조(산학협력처) ① 산학협력처에 산학협력지원팀을 둔다.

② 산학협력처장의 업무는 산업기술연구소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 산학협력처에 두는 팀의 현원은 정관의 정원 범위 내에서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0조(기획처) ① 기획처에 기획팀을 둔다.

② 기획처에 대학기획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교원으로 겸보할 수 있다.

③ 기획처장의 업무는 수석전문위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④ 기획처에 두는 팀의 현원은 정관의 정원 범위 내에서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1조(사무처) ① 사무처에 총무팀, 관리영선팀, 경리팀을 둔다.

② 사무처에 두는 각 팀의 현원은 정관의 정원 범위 내에서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2조(종합정보지원실<개정 2006.12.26>) ① 종합정보지원실에 정보지원팀을 두며 종합정보지원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.

② 종합정보지원실에 두는 팀의 현원은 정관의 정원 범위 내에서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삭제 <삭제 2006. 12. 26>

제12조의 2(중앙전자계산소) <본조 삭제 2006.12.26>

제12조의 3(부속 및 부설기관 등) ① 본 대학의 부속 및 부설기관의 현원은 법인 정관의 정원 범위 내에서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부속 및 부설기관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3조(교수회) ① 본 대학에 교수회를 둔다.

② 교수회는 전임강사 이상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.

③ 교수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에 의한다.

제14조(위원회) ① 본 대학 운영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장 자문기구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5조(부속시설 등) <삭제 2006.6.20>

제16조(임기) 교원으로 겸보하는 각 부서의 장의 임기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1. 부학장 및 대학본부 각 처장(사무처장 제외), 학과(부)장,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<개정 2006.12.26>

2. 각 부서 및 학과(부)의 하부 조직 책임자(행정직 제외)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 5 장 업무 분장

제17조(업무분장 및 위임 전결) 각 부서별 업무분장 및 위임전결은 학장이 따로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<개정 2010. 04. 01>

기구 조직표(신)

